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도시개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 추가하며,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조성토지의 공급 조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공람기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투자보고서를 기준”을 “투자보고서를 기준(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투자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인가를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자본금의 2배”를 “자기자본의 4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제57조제5항제6호 중 “복합적이고 입체적인”을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14일”을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시행자)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 ⑥ (생략) ⑦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u>자본금의 2배</u>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제18조(시행자)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u>한국공항공사</u>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투자 보고서를 기준(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u>영업인가를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투자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인가를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u>)--- <u>자기자본의 4배</u> ---. ----- ----- -----.

1. (생략)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⑧ (생략)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략)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

-- 자기자본-----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5. (현행과 같음)

6. -----

----- 특별설계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

6의2. ~ 8. (생략) ⑥ ~ ⑧ (생략)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① (생략)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u>14일</u>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u>이 경우 공급가능 면적 및 그 밖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6의2. ~ 8.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u>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 락 처	(044) 201 - 3732